

개정 약관 신·구 조문 대비표

(2015.5.27)

외 환 사 업 부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<u>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</u></p> <p>제1조 ~ 제11조 (생략)</p> <p>제12조 [업무처리의 중지, 해지]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~2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</p> <p>제13조 (생략)</p> <p>제14조 [약관변경]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전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.</u></p>	<p><u>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</u></p> <p>제1조 ~ 제11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12조 [업무처리의 중지, 해지]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~2 (현행과 동일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3. 기타 은행이 각 목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가. 사용자의 수발신인식별자 또는 전자문서 인증키값 노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나. 휴·폐업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</u></p> <p>제13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14조 [약관변경]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 간</u></p>	<p>-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</p> <p>- 약관을 변경할 경우 게시방법 및 게시기간을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② <u>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</u></p> <p>제15조 ~ 제20조(생략)</p> <p>부칙 제 1 조 이 약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신 설) 끝</p>	<p><u>게시하기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전 30일 전까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메일·안내공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토록 한다.</u></p> <p>③ <u>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제15조 ~ 제20조(현행과 동일)</p> <p>부 칙 (제정) 이 약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(1) 이 약관은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끝</p>	<p>명확히 함</p> <p>-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할 경우 통지절차 신설</p> <p>내규 및 실무지침 등의 관리지침 제8조 ③항에 따라 변경</p>